



美國特許法施行規則改正

—發明者訂正 등, 2月 27日施行—

美國特許商標廳(PTO)은 지난 2月 27일부터 施行하는 特許規則(37 CFR part 1 및 part 5)의 改正을 確定하였다.

이 規則改正은 82年 8月 27일에 發動한 特許法改正 가운데 금년 2月 27일부터 施行되는 部分에 關係 規則을 改正한 것으로서 작년 10월에 改正案이 發表되어 12月 16日 公聽會를 거쳐 一部 修正된 뒤 금년 1月 20일에 最終的인 規則으로 發表된 것이다.

改正骨子は 다음과 같다.

1. 配達證明 速達郵便에 의한 書類 및 料金の 提出

出願書類나 기타 書類, 料金 등을 PTO에 提出할 때 美國의 郵便局의 配達證明 速達郵便에 의해 PTO에 郵送하면 그 發信日이 提出日로 看做된다. 단 發信證明日로부터 PTO에의 到着日까지의 期間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期間보다 오래 걸렸을 때에는 PTO가 所定の 書類를 提出토록 要求한다. (§ 1.10)

2. 發明者의 訂正

出願書類에 表示한 發明者의 一部 또는 全部가 잘못된 것이 發見되었을 경우 그 잘못된 것이 故意에 의한 것이 아닌 限 眞正한 發明者로 訂正할 수가 있다.

訂正하는 데는 잘못이 發見된 후 되도록 빠른 時日內에 (1) 잘못이 發生된 경위와 發見時期를 明確히 하고 出願書類에 表示한 發明者의 宣誓添附 聲明을 포함하는 申請書, (2) 바른 發明者의 宣誓書(oath) 또는 宣言書(declarati-

on), (3) 所定の 料金 및 (4) 讓受人의 同意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1.48)

3. 出願日 및 出願書類의 補充

出願日을 確保하기 위해 發明者(=出願)에 의해 權限이 주어진 者는 누구든지 發明者 대신에 出願을 할 수 있다. 다만 宣言書 또는 宣誓書는 發明者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1.41 [C])

4. 宣誓書 또는 宣言書

宣誓書 또는 宣言書의 內容 및 署名에 대한 要件을 規定한 § 1.63이 新設되어 종래의 規定 (§ 1.65)은 削除되었다. PTO는 새로운 規則에 따라 特許出願用 宣言書의 樣式을 提案하고 있다. 그런데 PTO에서는 宣誓書 또는 宣言書에 대해서 금년 2月 27일부터 6月 30일까지의 사이에는 종전의 規定 (§ 1.65)에 의한 것도 受理하나 7月 1日 이후에는 新規定에 의한 것만을 受理한다.

(特許News 提供)

組成物使用方法 特許期間延長

—美國特許法 追加條項新設—

美國特許法(U.S. Code 35)에 다음 第155條가 追加되어 一部 組成物 및 그 使用方法에 대한 特許期間이 延長된다.

U.S. Code 35, 第155條 全文

第14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範圍內에 組成物 또는 그 使用方法을 포함하는 特許期間은 當該 組成物 또는 方法에 의해 聯邦食品醫藥粧品管理局(FDA)에 의한 規定에 의한 審査가 되고 나서 當該組成物 또는 方法의 國內 頒布 또는 販賣를 許可하는 條例가 公布되고 그 후 聯邦食品醫藥化粧品法 第409條에 의거하여 許可條